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5224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2. 16.

판결 선고2021. 4. 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483,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3. 체결된 증여계약을 19,483,7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9,483,7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B은 2019. 3. 4. D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일을 2029. 2. 25., 지연배상금률을 연 15%로 각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D은행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D은행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019. 3. 4. 원고와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D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D은행에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변제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이다.

(3) 피고 B은 2019. 7. 25. 최초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D은행은 2019. 10. 25.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20. 7. 31. D은행에 보험금으로 19,483,746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등

(1) 피고 B은 1990. 2. 21. 피고 C와 혼인하였다가, 2019. 7.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피고 B은 2019. 7. 3. 피고 C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9. 7. 5. 접수 제311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E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8. 6. 채권최고액을 23,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3. 1. 17.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피고 C는 2019. 7. 17. E은행에 83,555,517원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등

(1) 위 증여 당시 피고 B은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 각 근저당권부채무 외에도 E은행, F은행, D은행, D카드, G카드, E카드, H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8.경의 시가는 215,000,000원¹⁾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9,483,74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1. 26.까지는 해당 기간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이 2019. 7. 25. D은행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그 무렵 피고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위 인정 근거와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들은 1990.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성년인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피고들은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2019. 7. 17. 이혼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 C에게 증여된 것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8.경 시세는 2억 1,500만 원 정도이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2020. 4. 이후 급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시가는 2억 원 이하인 것으로 보인다(피고 C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92,500,000원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합계 83,555,517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모두 변제하여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08,944,483원 정도이다.

③ 피고 B은 이혼숙려기간 중일 것으로 보이는 2019. 6. 28. 퇴직일시금으로 66,662,3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는 피고 B이 그 외에 퇴직연금으로도 매월 2,790,000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한다.2) ④ 피고 B이 주식이나 도박에 빠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이혼의 귀책사유가 피고 B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3)

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의 소유로, 위 퇴직일시금과 연금은 피고 B의 소유로 분할하였다고 주장한다.

⑥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피고 B의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나, 피고 C는 피고 B이 주식과 도박에 빠져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B의 개인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4) 이와 달리 피고 B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춘수

별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4)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